
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출금거래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(이하 '은행'이라 함)과 고객(이하 '이용자'라 함)간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출금거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무매체 거래는 이용자가 카드 및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화기기에서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하는 거래를 말한다.

제 3 조 (제공 서비스의 종류)

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매체 거래 서비스는 출금, 조회에 한하며, 은행은 필요한 경우 **서비스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.**

제 4 조 (서비스 이용 가능 매체)

이용자는 은행이 설치하여 운용중인 자동화기기(ATM)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(계약의 성립)

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"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이용신청서"(이하 '신청서'라함)을 작성,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,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 6 조 (거래의 확인사항)

은행은 무매체 거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, 무매체 거래용 비밀번호만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제3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.

제 7 조 (서비스별 이용시간)

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 8 조 (거래지시 및 처리)

- ① 은행은 예금거래 기본약관등 해당약관에도 불구하고 통장, 지급청구서, 수표없이 제6조의 내용확인만으로 이용자의 거래를 처리하기로 한다.
- ②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



제 9 조 (출금계좌)

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은행이 정한 서비스이용 가능과목 중 이용자 명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거래금액 한도)

1 회의 출금한도(이체포함) 및 1 일 출금한도(이체포함)는 은행이 정한다.

제 11 조 (거래의 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.

- 1. 거래중 무매체 거래용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4 회 이상 틀렸을 경우
- 2. 출금계좌의 인출 가능액이 출금 또는 이체할 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부족한 경우
- 3. 이용자의 거래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
- 4. 법적 지급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5.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·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·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

제 12 조 (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 등의 관리)

- ① 이용자는 거래 안전과 예금보호를 위하여 신청일에 은행 창구(핀패드)에서 거래용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은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은행에 거래용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으며, 비밀번호를 잊거나 4 회 이상 오류 입력으로 무매체거래가 정지된 경우 은행에 제신고 절차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 신청한 후 다시 등록한다.

제 13 조 (서비스 정지, 해지, 사고신고)

- ① 11 조의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서비스를 정지 또는 해지하기로 하며, 서비스를 계속 이용 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서면으로 재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거래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손실부담 및 면책)

① 은행은 은행에 신고된 계좌 비밀번호,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
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·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.
- 1. 이용자가 계좌번호, 비밀번호,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계좌번호, 비밀번호,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- ③ 이용자로부터 비밀번호,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은행은 그때로부터 해당 비밀번호,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.

제 15 조 (합의관할)

-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은행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.
-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16 조 (기타사항 준용)

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, 각예금별(신탁포함) 약관, 은행 내부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약관은 2010. 11. 24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약관은 2012. 6. 26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약관은 2015. 6. 1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약관은 2015. 9. 2 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

1. 이 약관은 2019. 2. 28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약관은 2021. 4. 12 부터 시행한다.